

[별표 6] <개정 1995.10.19>

면허의 종류별 시험과목(제285조관련)

면허의 종류	시험방법	시 험 과 목
1. 원자로조종 감독자면허	1. 필기시험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별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원자로의 조종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재료 및 설계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핵연료물질 등의 취급 및 관리 5. 방사선안전관리 6. 원자력관계법령
	2. 실기시험	원자로의 종류, 용량급, 공급사의 구분에 따라 당해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당해 원자로의 조종감독자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검정토록 한다. 다만,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아니한 당해 원자로는 해당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실시한다. 1.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 조작 2.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3.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4.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5.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6. 방사선장해방어 7. 비상시의 대책
2. 원자로조종 사면허	1. 필기시험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별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1. 원자로이론 2. 원자로시설의 구조 3. 원자로의 운전제어 4. 방사선안전관리 5. 원자력관계법령(핵연료주기시설과 핵물질사용 관계법령은 제외한다)

	2. 실기시험	원자로의 종류, 용량급, 공급사의 구분에 따라 당해 원자로 모의제어반에서 원자로의 조종사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검정토록 한다. 다만, 모의제어반이 설치되지 아니한 당해 원자로는 해당발전소 주제어실에서 실시한다. 1. 원자로의 예비운전·시운전의 절차 및 그 운전 조작 2. 지시신호의 판별 및 그 대책 3. 계측시설의 이용 및 그 판독방법 4. 원자로시설의 동 특성 및 운전 5. 방사능감시시설의 기능 및 사용법 6. 방사선장해방어 7. 비상시의 대책
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면허	필기시험	핵연료물질의 취급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핵연료물질의 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성질 2.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 3. 방사선의 측정 및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기술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로의 관리 등 관계법령은 제외한다)
4. 핵연료물질 취급자면허	필기시험	핵연료물질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핵연료물질의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대한 기초 지식 2. 핵연료물질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3. 방사선측정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로의 관리 등 관계법령은 제외한다)
5.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필기시험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6.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	필기시험	1. 원자력기초이론 2.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에 관한 기초지식 3. 방사선에 의한 장애방어에 관한 기초지식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방사성동위원소의 인체에 대한 취급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방사선에 의한 장애 및 그 방어 2. 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과목중 수험자가 선택하는 1과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의학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기술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필기시험	방사선의 취급감독자로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정한다. 1. 방사선에 의한 장애 및 그 방어 2.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분야 중 방사선에 관한 것에 한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